

『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21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「의료보호법」이 「의료급여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
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의료급여법」 개정 용어 반영(안 제1조 ~ 제3조, 제6조, 제7조)
 - 당초 : 의료보호, 대불금 → 변경 : 의료급여, 대지급금
-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 명칭 변경 (안 제7조)
 - 당초 : 기금출납명령관, 기금출납공무원
 - 변경 : 기금담당관, 기금출납원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의료급여법」,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‘의료보호, 대불금’ 용어를 ‘의료급여, 대지급금’으로,
- ‘기금출납명령관, 기금출납공무원’을 ‘기금담당관, 기금출납원’으로 변경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지원기준이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